

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안내

학교폭력 피해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속한 치료를 위해 『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학생에게 발생한 신체·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공제회가 우선 피해 학생에게 지급한 후 그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.

학교폭력이란?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·유인, 명예훼손·모욕, 공갈, 강요·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, 따돌림, 사이버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

처리절차

학교폭력 피해발생



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

피해학생 보호조치

분쟁조정 : NO

분쟁조정 : YES

학교안전공제회

-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사고 통지
- 청구인은 치료비 청구
- 14일 이내 심사결정, 경우에 따라 연장 (주말·공휴일 제외)

사고통지 ⇒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
 청구 ⇒ 시스템/우편 모두 가능

자체 합의(종결)

구상권 행사

- 피해자(또는 보호자)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.
- 구상절차는 변제(채무상환)촉구 ⇒보전 처분(가압류)⇒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 ⇒재산명시⇒강제집행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.(순서 변동 있을 수 있음)

지원 범위 및 기간

구 분	세 부 사 항	인 정 기 간	비 고
심리상담 및 조언	교육감 지정 기관의 심리상담 및 조언비용	상담 및 심리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2년	1년 범위 내 연장 가능
치료를 위한 요양 및 의약품	의료기관, 보건소, 약국 등에서의 치료비용 및 약제비	2년	1년 범위 내 연장 가능
일시보호	교육감 지정 기관의 일시 보호 비용	30일	

※ 교육감 지정 기관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(열린마당 > 업무협약(MOU) > 업무협약(MOU) 체결현황) 또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 ※ 치료비 등 청구액이 통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, 공제회 심사를 거쳐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출 서류

학교폭력사고통지(학교)	치료비 청구 시
학교폭력사고발생 통지서	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서
가해학생에 대한 인적사항	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
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또는 회의록	진료비 세부내역서
	약제비 계산서·영수증 + 처방전
서약서 및 위임장(피해학생 측)	진단서(공제회에서 요청 시)
	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	청구인 통장사본

※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※ 서약서, 위임장, 청구서 서식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▶자료실 ▶서식자료에서 출력하여 활용

지원대상 학교

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

※ 유치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